# -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-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

2020. 6. 26.

도시기반시설본부

# - 목 차 -

# I. 일반 사항

| 1. 목 적   | 8  |
|--|----|
| 2. 적용 범위   | 8  |
| 3. 관련 근거   | 9  |
| 4. 용어 정의   | 10 |
| 5. 폭염관련 기상정보   | 11 |
| 6. 2020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  | 11 |
| Ⅱ.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 방안   |    |
| 1. 폭염대비 단계별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 | 14 |
| 2. 폭염특보 발령시 사안별 대응 요령  | 15 |
| 3. 폭염경보시 공사중지 예외 인정  | 16 |
| 4. '폭염영향예보'공유방(카카오톡) 개설·운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    | 16 |
| Ⅲ. <b>참고자료</b>   |    |
| 1.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  | 19 |
| 2. 열사병 예방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(고용노동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 |
| 3. 2020년 오존 예·경보제 운영계획(대기정책과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| 36 |
| IV. <b>점검표 및 보고서식</b>  |    |
| 1. 폭염특보 발령 일일상황(보고서식)  | 51 |
| 2. 건설현장 폭염대비 사전점검(1차 : 보고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3 |
| 3. 건설현장 폭염대비 준비실태 점검(2차 : 보고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4 |
| 4. 폭염 혹서기 공사현장 점검(3차 : 보고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 |
| 5. 온열환자 예방 자체 점검표(점검자 : 현장감독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 |
|  |    |

| - |
|---|
|   |

# 【제·개정 이력】

| 일자<br>(변경 등)   |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   |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협의기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'20.6.26<br>시행 | 폭염대비 건설근로자 보호<br>대응 매뉴얼 | 폭염대비 건설근로자 보호<br>대응 매뉴얼 시행 | 김형렬 | 도기본<br>공사감독<br>부서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

| - | 6 | - |  |
|---|---|---|--|
|   |   |   |  |

# Ⅰ. 일반사항

- 1. 목 적
- 2. 적용 범위
- 3. 관련 근거
- 4. 용어 정리
- 5. 폭염관련 기상정보
- 6. 2020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

#### 1. 목 적

- □ 본 매뉴얼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설공사장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건설공사 시행사, 공사감독자의 임무·역할,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
- □ 본 매뉴얼은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건설공사장 여건을 감안하 여 탄력적으로 적용함

## 2. 적용 범위

- □ 도시기반시설본부내 모든 공사장 근무 노동자
  - 건설공사장 및 근로자 현황(2020. 6. 20 기준)

| 근로    | 자(일 평 | 균)  |     | <b>건설공사장</b> (102개소)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계     | 내국인   | 외국인 | 계   | 토 목                  | 건 축 | 설 비 | 방재시설 | 도철사업 | 도철토목 | 도철설비 |
| 4,186 | 3,386 | 800 | 102 | 23                   | 18  | 28  | 13   | 5    | 4    | 11   |

<sup>※</sup> 총800명(중국 181, 베트남 63, 캄보다아 143, 미약마 175, 태국 179, 스리랑카 52, 기타7)

### 3. 관련 근거

- □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 ⇒ 국민보호대책 강화
  - ㅇ「폭염 재난」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(행정안전부, '19. 5)
  - ㅇ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(일자리정책과-8836, '19. 5. 24)
    - 폭염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(고용노동부) 등
- □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의무가 있고, 옥외작업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
  -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 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,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 [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 업주 등의 의무), 제39조(보건조치),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]
  - 옥외작업자도 어린이·노인과 같이 취약계층으로 분류 [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(취약계층의 범위)]

### 4. 용어 정리

| 구 분    | 내용   |
|--------|--|
| 영향예보   |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때,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폭염관련 기상정보문을 통해서 분야별·지역별 영향정보 제공 |
| 관심     | 일최고체감온도가 31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의     | 일최고체감온도가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고     | 일최고체감온도가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험     | 일최고체감온도가 38℃ 이상인 상태가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상특보   |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<br>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           |
| 폭염 주의보 | 일최고체감온도가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폭염 경보  | 일최고체감온도가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혹염     | 일 최고기온 38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극염     | 일 최고기온 40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<br>※ 역대 최고기록: 41℃ (18.8.1, 홍천)    |

#### ----- < 체감온도란? > -----

동일한 기온에서도 **습도가 증가**하면 **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**지기 때문에 기온이 30도~40도 범위에서, 습도 50%를 기준으로 **습도가 10% 증가 혹은 감소함에**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℃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

\* (예) 기온이 33도인 경우,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변화 (습도)40%→(체감온도)31.9℃, (습도)50%→(체감온도)33℃, (습도)60%→(체감온도)34℃

### 5. 폭염관련 기상정보

- □ (2020년도 기온 전망) 월평균 기온은 6월과 7월의 경우 평년(6월 20.9~21.5도·7월 24.0~25.0도)과 비슷하거나 높고, 8월은 평년(24.6~25.6도)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
  - \* 6월 낮 동안 더위,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
  - ※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(최근 6년, 서울)

| 구분     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최고기온(℃) | 35.8  | 34.4  | 36.6  | 35.4  | 39.6  | 36.8  |
| 폭염특보    | 7일    | 9일    | 41일   | 33일   | 43일   | 32일   |
| 폭염일수    | 10일   | 8일    | 24일   | 13일   | 35일   | 15일   |

◆ 2018년 인명피해 현황 : <u>온열질환자 616명, 사망6명</u>
 ▶ 전국 폭염 사망자 80명
 ※ 역대 최고기록 : 41℃(2018, 8, 1, 홍천)

### 6. 2020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

- □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('20.5 ~, 기상청)
  - 서울 내 국지적 재해에 효율적 대응 위한 특보구역 세분화 추진
     ⇒ 기존 단일 구역(서울)에서 서북권, 동북권, 서남권, 동남권의 4구역으로 구분

| 기상자료 및 사회·경제자료 분석(행정구역)                      | 권역             | 포함 구명   |
|--|----------------|---|
| 日曜マ (10年7 10年7 10年7 10年7 10年7 10年7 10年7 10年7 | 1 (동남권)        | (4) 강동구, 송파구, 강남구, 서초구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2 (서남권)        | (7) 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,<br>동작구, 관악구, 금천구       |
|  | 3 <b>(서북권)</b> | (6) 은평구, 종로구, 마포구, 서대문구,<br>중구, 용산구             |
| 483 8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(동북권)        | (8) 도봉구, 노원구, 강북구, 성북구, 동<br>대문구, 중랑구, 성동구, 광진구 |

| _ | 1 | 2 | _ |
|---|---|---|---|
|   |   |   |   |

# Ⅱ. 건설공사장 노동자 보호 방안

- 1. 폭염대비 단계별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
- 2. 폭염특보 발령시 사안별 대응 요령
- 3. 폭염경보시 공사중지 예외 인정
- 4. '폭염 영향예보' 공유뱅(카카오톡) 개설·운영

# 1. 폭염대비 단계별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

### □ 폭염대비 사전 준비기간(5월)

| 구 분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        | ○ 그늘막, 조립식 침상 등 근로자 휴게공간 추가 확보,   |  |  |  |  |
|         | ○ 에어콘, 선풍기 등 냉방기 이상유무 확인 점검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○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등 보랭장비 구입         |  |  |  |  |
| 시행사     | ○ 샤워실, 화장실 등 청결상태 유지관리            |  |  |  |  |
| (현장관리자) | ○ 근로자를 위한 충분하고 깨끗한 식수, 식염 공급대책 마련 |  |  |  |  |
|         | ○ 폭염시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요령 등 자체 대책 수립 실시 |  |  |  |  |
|         | ○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검토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○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등  |  |  |  |  |
| 공사감독부서  | ○ 폭염대비 준비실태 사전현장 점검 실시            |  |  |  |  |
| (공사감독관) | ※ 【서식2】건설현장 폭염대비 사전점검(1차 : 보고서식)  |  |  |  |  |
| 총무부     | ○ 부서별 점검내용을 총괄(미비점 등 보완 추진)       |  |  |  |  |

### □ 폭염대비 준비실태 점검강화(6~7월)

| 구 분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        | ○ 사전준비 기간 미비점 보완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시행사     | -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등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※ 【서식5】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(점검자 : 공사감독관)   |  |  |  |  |
| 공사감독부서  | ○ 폭염대비 미비사항 보완 등 이행실태 현장 점검 실시      |  |  |  |  |
| (공사감독관) | ※ 【서식3】건설현장 폭염대비 준비점검(2차 : 보고서식) 참조 |  |  |  |  |
| 총무부     | ○ 부서별 점검내용을 총괄(미비점 등 보완 추진)         |  |  |  |  |

## □ 폭염 흑서기 집중점검 실시(7~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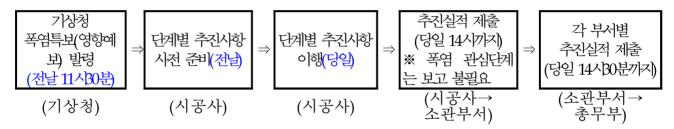
| 구 분     | 내용  |  |  |  |
|---------|---|--|--|--|
| 시행사     | ○ 폭염특보(폭염 영향예보)에 따른 근로자 휴식시간 또는 작업중단 이행   |  |  |  |
| 공사감독부서  | ○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공사장 이행실태 집중점검 실시(공사장별 3회이상) |  |  |  |
| (공사감독관) | ※ 【서식4】폭염 혹서기 공사현장 점검(3차 : 보고서식) 참조       |  |  |  |
| 총무부     | ○ 폭염경보시 공사현장 추진사항 보완지시(위기 상황시 공사중지 등)     |  |  |  |

#### 2. 폭염특보 발령시 사안별 대응 요령

#### □ 폭염 영향예보 진행절차

- 폭염 영향예보(관심·주의·경고·위험) 발령 여부 확인(소관부서, 공사현장)
  - 기상청 발표시간 : 전날 11시 30분(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부터 발표)
- 확인매체: 기상청 모바일 웹(mkma.go.kr)과 날씨누리(http://www.weather.go.kr) 등
- ※ 기상청의 '폭염 영향예보제'는 매년 6. 1~9.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5월 중 폭염특보(주의보, 경보) 등 기상 사항은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수시 확인 바람.

#### □ 폭염특보(폭염 영향예보) 발령시 보고 체계



※ 보고서식 :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일일 상황 【보고서식1】참조

### □ 폭염특보(예비단계 포함) 발령시 건설공사장의 단계별 조치사항

| 폭염특보  | 폭염 영향예보  | 조 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|--|--|--|--|
|       | 《예비단계》   | o 폭염 저감을 위해 공시장 살수량 증대 ( 매시간 1회 이상)          |  |  |
|       | 폭염 <mark>관심</mark> (단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공사현장구내식당 등) 청결 관리에 유의하여 식중독, 장티푸스 등 질병을 예방 |  |  |
|       | (일최고체감온도   | o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  |  |  |
|       | 31℃이상, <mark>2일)</mark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ㅇ 폭염대비 시전 안전교육 실시(열시병 등 온열질환에 약한 근로자 미리 확인)  |  |  |
|       |  | o 작업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(10분 휴식 ⇒ 15분 휴식 등)       |  |  |
|       | 폭염 주의(단계)<br>( <mark>일최고체감온도</mark><br>33°C이상, 2일)       | ○ 민감군, 중작업자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(30분 간격 휴식 등)    |  |  |
| 폭염주의보 |  | ㅇ 옥외 작업자에게 아이스 조끼, 아이스 팩 등 보랭장구 사용을 권장       |  |  |
|       |  | ㅇ 덥다고 안전모·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구 착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     |  |  |
|       |  | ※ 나머지는 폭염 관심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 | 폭염 경고(단계)  | o 가장 무더운 오후 14~ 17시 사이 실외작업 중지 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 |  |  |
|       | ( <b>일최고체감온도</b><br>35°C이상, 2일)<br>폭염 위험(단계)<br>(일최고체감온도 | o 무더위 시간대에 근무를 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(1~2시간 조기 |  |  |
| 포여거브  |  | 출근 등 ) ※ 나머지는 폭염 주의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             |  |  |
| 폭염경보  |  | o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(14시~17시) 공사 중단(실내·외 작업 중단)   |  |  |
|       |  | o 무더위 시간대에 근무를 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(1~2시간 조기 |  |  |
|       | 38℃이상, <u>1일)</u>  | 출근 등 ) ※ 나머지는 폭염 경고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             |  |  |

#### 3. 폭염경보시 공사중지 예외 인정

#### ◈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계속공사

- 긴급한 안전과 관련된 작업 또는 고가의 건설중장비를 운영하거나 공정이 중단 되었을 때 품질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·연속 공정 (콘크리트 타설 등)은 예외적으로 계속 공사 인정 필요

#### ◈ 외부의 기온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공간에서의 작업

- 외부 노출 없이 일정한 온도 유지되는 실내공간(터널 등) 에서의 작업 또는 냉방기 등으로 실외온도보다 낮게 일정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건물 등에서의 작업

#### ※ 국민행동요령(무더위 안전상식)

-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<u>실내·외 온도차를 5℃ 내외</u>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(건강 실내 냉방온도 26℃ ~ 28℃가 적당)
-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,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여름철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.
-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.
- ※ 폭염경보(35℃이상, 2일) 발효중 기상청 발표 서울시 온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현장 여건별 근로조건이 상이 등에 따른 작업여부는 발주기관 판단 하에 시행(근거 :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-10482,'19, 5,31,)

#### 4. '폭염영향예보'공유방(카카오톡) 개설·운영

| 참여대상 :  | 공사감독부서(공사감독 전직원)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기간 :  | 매년 5~ 9월(5개월간)                 |
| 운영내용 :  |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유지,  |
| 코로나19 ㅇ |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 공유, 부서간 협조사항 등 공유 |
| 운영방법 :  | 공사감독관을 카카오톡에 초대 폭염특보 발령 등 상황   |
| 발생시 신속  | ·한 대응 체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|

# Ⅲ. 참고자료

[참고자료 1]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(<del>교육용</del>)

[참고자료 2] 열사병 예방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(고용노동부)[교육용]

(참고자료 3) 2020년 오존 예·경보제 운영계획(대기정책과)

| - | 18 | - |  |
|---|----|---|--|
|   |    |   |  |

# 붙임 1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



#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

| Ⅰ.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---|----|
| Ⅱ. 폭염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 |
| Ⅲ. 고열작업에 의한 증상 및 대책 ⋯⋯⋯⋯⋯⋯⋯⋯⋯⋯⋯  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Ⅳ. 하절기 건강장애 예방조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| 24 |
| 참고자료 1. 폭염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(고용노동부)                     | 25 |

※ 본 안전관리대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혹서기 등 현장 안전보건 관리 Guide Line을 정리한 내용임

## Ⅱ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

#### □ 사전 준비사항

-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
- 정전에 대비 손전등, 비상 식음료, 부채,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
- 단수에 대비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
-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
-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,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 을 최대한 차단

#### ② 폭염주의보 발령시

####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, 일최고열지수 32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

-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
-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~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
-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
-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 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
-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
- 식중독, 장티푸스,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, 숙소, 식 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
- 작업 중에는 매 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(염분) 섭취(알코올,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)
- 뜨거운 액체, 고열기계,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

#### ③ 폭염경보 발령시

#### <u>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</u>, 일최고열지수 41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

-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
-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
-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
- 12시~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·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함
-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
-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

# Ⅱ 폭염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

□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, 조선,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고 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고열장해가 유 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#### □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

-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<mark>항상성</mark>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함
- 그러나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열 발산이 효과 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장해를 초래하게 된다

이러한 고열장에에 영향을 마치는 것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다.

#### 《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》

#### ◎ 1차 생리적 영향

- 피부혈관의 확장
- 발한
- 근육이완
- 호흡증가
- 체표면적 증가
- ◎ 2차 생리적 영향
  - 심혈관장해
  - 수분과 염분부족
  - 요량감소로 인한 신장장해
  - 위장장해
  - 신경계장해



#### □ 고온의 노출기준

(단위 : ℃, WBGT)

| 작업강도<br>작업휴식시간비  | 경작업  | 중등작업 | 중작업  | 참 고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|
| 계속작업             | 30.0 | 26.7 | 25.0 | 경작업 : 앉거나 서서 또는 팔을 가볍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매시간 75%작업, 25%휴식 | 30.6 | 28.0 | 25.9 | 쓰는 일 등(200kcal이하)<br>중등작업: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        |
| 매시간 50%작업, 50%휴식 | 31.4 | 29.4 | 27.9 | 는 일 등 (시간당 200-350kcal)<br>중작업 : 곡괭이질 또는 삽질 등(시간당 |
| 매시간 25%작업, 75%휴식 | 32.2 | 31.1 | 30.1 | 350-500kcal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고열작업에 의한 증상 및 대책

|  | I     |  |
|--|-------|--|
|  |       | ○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열경련(熱經學, Heat Cramp)   | 원인    | 경우에 자주 발생하며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ر د د | ○지나친 발한(發汗)에 의한 탈수와 염분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소실이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작업시 많이 사용한 수의근(Voluntary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Muscle, 隨意筋)의 유통성 경련이 오는                     |
| atwints of   | 증상    | 것이 특징  |
| 温息后( ) ( ) +FR   |       | ○이에 앞서 현기증, 이명(耳鳴),두통,                       |
| 7 700  |       | 구역, 구토 등의 전구증상이 나타남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 THE SHAPE OF THE PARTY OF THE P |       |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낮추며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+1-   | 더 이상의 발한이 없도록 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3   | 치료    | ○동시에 생리 식염수 1~2ℓ를 정맥주사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하거나 0.1%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수분과 염분을 보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열사병(熱射病, Heat Stroke)  |       |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또는 옥외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원인    |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받는 경우에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발한(發汗)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체열방출이 장해됨으로써 체내에 열이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축적되어 뇌막혈관은 충혈되고 두부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40 - 100  |       |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조절 중추의                         |
| THE PART (ACC (II) -   |       | 기능, 특히 발한기전이 장해를 받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MARCH NE   |       | 기정, 특히 설립기선이 장애를 받음<br>○또한 체온이 41~43℃까지 급격하게 |
| ON THE STATE OF  | 증상    |  |
|  |       |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며 피부가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건조하게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치료를 안하면 100% 사망하며, 치료를                      |
| 100  |       | 하는 경우에는 체온43℃이상인 때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약 80%, 43℃이하인 때에는 약 40%의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높은 사망률을 보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체온의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. 얼음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9℃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치료    | 빨리 내려야 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○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찬물로 몸을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하여 증발 냉각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      | 이라도 시도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,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열耳로(熱疲勞, Heat Exhaustion) | 원인 | <ul><li>○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폭로된 결과이며,<br/>중노동에 종사하는 자, 특히 미숙련공<br/>에게 많이 발생함.</li><li>○기온과 습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 발생함</li></ul>  |
| WHAT HEAR                 | 증상 | ○경증인 경우에는 고온환경에서 일할 때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한 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낌. ○실신환자는 무력감, 불안 및 초조감,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남. ○의식을 잃고 쓰러질 경우 의식은 2~3분이내에 회복하지만, 고온환경에 머물러있을 때에는 혈압, 맥박수, 자각증상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1~2시간이 걸림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치료 | ○환자를 눕히거나 머리를 낮게 눕히면 곧 회복이 되므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음. ○환자를 시원한 곳에 옮겨 안심시키고 1~2시간 쉬게 하면서 물을 마시도록 함   |
| 열성발진(熱性發疹, Heat Rash)     | 원인 | ○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기는 것<br>으로 고온, 다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<br>않는 환경에서 작업할 때 많이 발생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상 | ○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만 붉은 홍반성<br>구진이 무수하게 나타나며, 대개의 경우<br>맑거나 우유빛의 액체가 찬 수포로<br>변한다.<br>○발진은 가렵지는 않으나 따갑고 얼얼한<br>느낌이 있다. 이러한 통증은 발진부위<br>보다 훨씬 광범위하며, 발진이 생기기에<br>앞서 나타난다.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치료 | ○고온환경을 떠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<br>곧 치유되며, 가급적 시원한 환경에서<br>땀을 적게 흘리고 2차적 감염을 예방<br>하기 위하여 neomycin을 함유한 로션을<br>사용<br>○냉수 목욕을 한 다음, 피부를 잘 건조<br>시키고 칼라민로션이나 아연화연고를<br>바름                       |

# Ⅳ 하절기 건강장애 예방조치

#### □ 안전대책

- 여름철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
-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~3시 사이에는 가능 한 외부작업 지양 고온의 허용온도 Level(미국 ACGIH)

| 작업의 강도  | 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| 허용온도레벨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지극히 경작업 | 손끝을 움직이는 정도(사무)           | 32℃    |
| 경작업     | 가벼운 손작업(선반, 감시보턴조작, 보행)   | 30℃    |
| 중등도작업   | 상체를 움직이는 정도(줄질, 자전거 주행)   | 29℃    |
| 중등도작업   | 전신을 움직인다(30~40분에 한번 휴식한다) | 27℃    |
| 중작업     | 전신을 움직인다(즉시 땀이 난다)        | 26℃    |

- \* ACGIH: 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
- 작업중에는 매 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충분한 물을 섭취
  - ※ 알코올,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 등은 피할 것
- 현장내 식당이나 숙소주변의 방역,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등에 대한 청결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는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보건/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

#### □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

|  | 개<br>요 | ○ 혹서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건강<br>장해 발생   |
|--|--------|---|
|  | 대<br>책 | <ul><li>○ 하절기 무리한 옥외작업 지양</li><li>-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의 합리적인<br/>배열</li><li>○ 적당량의 수분 및 염분 섭취</li></ul> |

#### 참고1

####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(폭염) / 고용노동부

#### 1 '폭염'이란?

- 1-1. (폭염) 폭염이란 여름철에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은 기온(이하 '고온환경'이라 함)을 말합니다.
- 1-2. (건강장해)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로는 열사병, 열탈진, 열경련 등(이하 '열사병 등'이라 함)이 있습니다.
  - **열사병(heat stroke)** : 고온·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체온조절장해를 말하며 현기증, 두통,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아 뜨겁고 마른 피부 가 되어 체온이 41°C 이상 상승하며 신속히 치료 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.
  - **열탈진(heat exhaustion)**: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입니다.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, 피로감, 현기증, 식욕감퇴, 두통, 구역, 구토, 피로감 등이며 열사병과는 달리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데 일반적으로 38.9℃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.
  - **열경련(heat cramps)**: 폭염 상태에서 심한 육체 활동을 함으로써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. 보통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피부는 습하고 차가운 것이 특징이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한 정도입니다.

#### 2 폭염 특보

2-1. (폭염 특보의 구분) 여름철 기온에 따른 폭염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구분    | 기온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경 보   | 일최고체감온도 35 ℃ 이상 |
| 주의보   | 일최고체감온도 33 ℃ 이상 |
| 예비단계* | 일최고체감온도 31 ℃ 이상 |

- \* 경보, 주의보는 기상청「예보업무규정」[별표8] 특보의 발표기준이며,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.
- \* '예비단계'는 '폭염 영향예보' 기준으로서 일최고체감온도 31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의 기준입니다. (폭염특보 기준이 아님에 유의)

기상청에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'더위체감지수'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더위체감지수를 통해서도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| 분류등급 | 보통     | 높음     | 매우 <del>높음</del> | 위험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더위체감 | 21℃ 이상 | 25℃ 이상 | 28℃ 이상           | 31℃ 이상  |
| 지수   | 25℃ 미만 | 28℃ 미만 | 30℃ 미만           | 31 6 10 |

- ※ 더위체감지수는 온도, 습도, 풍속 등을 고려한 지수이며,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
- \* 기상청 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▶ 생활과 산업 ▶ 생활기상정보 ▶ 더위체감지수 (5~9월 서비스, 매일 6시, 18시 제공)
- \*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(https://lifesms.kma.go.kr)에 가입하면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2-2. (폭염 정보의 확인) 기상청 홈페이지(www.kma.go.kr)를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- \* 스마트폰에서는 '안전디딤돌'(행정안전부) 앱을 통해 기온과 습도, 풍속 및 기상특보 상 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# 3 단계별 예방조치

- 3-1. 사전준비 단계 ※ 더위체감지수가 '높음'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
  - 3-1-1. (민감군 확인) 당뇨병, 낭포성섬유증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개인 질환이 있는 사람, 고령자 등(이하 '민감군'이라 함) 폭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.
    - \*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,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- 3-1-2. (연락망 구축) 폭염 특보에 따른 작업제한을 통보하거나 건강이상 자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을 위해 연락망을 구축하거나 정비하십시오
  - 3-1-3. (휴게공간의 마련) 옥외작업자가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휴 게공간을 마련하십시오.

#### 휴게공간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십시오.

-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할 것
- 소음·낙하물,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
- 동시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과 공간을 확보할 것
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할 것
-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거나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설치할 것
- 휴게공간 내에는 시원한 물과 깨끗한 컵을 준비할 것
- 3-1-4. (작업스케줄 등 관리계획 마련) 시원한 시간대에 작업하기 위한 주 간·일간 작업계획, 휴식시간 배분 계획,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활용 방안\* 등을 마련하십시오.
  - \* 폭염에 따라 단축된 작업시간은 그 시간을 실내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- 3-1-5. (안전보건교육) 옥외작업자에게 열사병 등의 종류와 증상, 응급조 치 요령, 기상청 정보의 활용방법, 적절한 의복착용 요령, 이상자 발 견 시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하십시오.
  - \* 열사병 등 예방을 위한 3대 수칙, '주기적인 **물(water)** 섭취와 **그늘(shade)**에서의 휴 식(rest)'이 중요함을 교육하십시오.
  - \*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#### 3-2. 폭염예비단계 ※ 일최고체감온도 31℃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

- 3-2-1. (폭염 정보의 제공) 폭염 예비단계가 발표되면 노동자에게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.
  - \* '예비단계'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단계 중 하나로서 **일최고체감온도** 31℃ 이상 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의 발표됩니다.
- 3-2-2. (휴식)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, 더 길게 갖도록 조치하십시오.
  - \* 무더운 환경에서는 체내의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휴식시간이 필요로 합니다.

- 3-2-2. (민감군 등에 대한 추가조치) 민감군, 불침투성 작업복(화학물질 보호복 등)을 입고 작업하는 노동자, 중작업\* 수행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십시오.
  - \* '중작업'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작업으로서 중량물 옮기기, 삽질, 해머질, 톱질, 단단 나무 대패질 또는 끌로 파기, 콘크리트 블록 쌓기 등이 있습니다. 이러한 작업들은 체내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.
- 3-2-3. (음료수 등의 제공) 옥외작업자가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.
  - \* 시간당 4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- \* 수시로 물을 마심으로서 화장실에 가는 빈도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노동자 수에 맞춰 소변기 등도 충분히 마련하십시오.
- 3-2-4. (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)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서로 상대방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(Buddy system)
- 3-3. 주의보 단계 ※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
  - 3-3-1. (폭염 정보의 제공)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동자에게 발령사 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.
  - 3-3-2. (고온환경 적응 프로그램 운영) 신규입사자 또는 휴가 복귀자가 고 온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작업량을 늘려가는 고온환경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십시오.
    - \* 고온환경 적응프로그램 예시 (미국 NIOSH)
    - 신규입사자 : 첫날 20%, 둘째날부터 20%씩 작업량 증가
    - 휴가복귀자 : 첫날 50%, 둘째날 60%, 세째날 80%, 네째날 100%
  - 3-3-3. (휴식)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, 더 길게 갖도록 조치하십시오.
    - \* 무더운 환경에서는 체내의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휴식시간이 필요로 합니다.

- 3-3-4. (민감군 등에 대한 추가조치) 민감군, 불침투성 작업복(화학물질 보호복 등)을 입고 작업하는 노동자, 중작업\* 수행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십시오.
  - \* '중작업'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작업으로서 중량물 옮기기, 삽질, 해머질, 톱질, 단단한 나무 대패질 또는 끌로 파기, 콘크리트 블록 쌓기 등이 있습니다. 이러한 작업들은 체내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.
- 3-3-5. (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 조절) 가장 더운 시간대인 2~5시 사이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이십시오.
- 3-3-6. (음료수 등의 제공) 옥외작업자가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.
  - \* 시간당 4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- \* 수시로 물을 마심으로서 화장실에 가는 빈도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노동자 수에 맞춰 소변기 등도 충분히 마련하십시오.
- 3-3-7. (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)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서로 상대방의 이 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(Buddy system)
- 3-4. 경보 단계 ※ 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
  - 3-4-1. (폭염 정보의 제공)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노동자에게 발령사 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.
  - 3-4-2. (고온환경 적응 프로그램 운영) 신규입사자 또는 휴가 복귀자가 고 온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작업량을 늘려가는 고온환경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십시오.
    - \* 고온환경 적응프로그램 예시 (미국 NIOSH)
    - 신규입사자 : 첫날 20%, 둘째날부터 20%씩 작업량 증가
    - 휴가복귀자 : 첫날 50%, 둘째날 60%, 세째날 80%, 네째날 100%
  - 3-4-3. (휴식)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, 더 길게 갖도록 조치하십시오.
    - \* 무더운 환경에서는 체내의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휴식시간이 필요로 합니다.

- 3-4-4. (민감군 등에 대한 작업제한) 민감군, 불침투성 작업복(화학물질 보호복 등)을 입고 작업하는 노동자, 중작업 수행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실외작업을 제한하십시오.
- 3-4-5. (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증지) 가장 더운 시간대인 2~5시 사이에 는 긴급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지하십시오.
- 3-4-6. (음료수 등의 제공) 옥외작업자가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.
  - \* 시간당 4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- \* 수시로 물을 마심으로서 화장실에 가는 빈도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노동자 수에 맞춰 소변기 등도 충분히 마련하십시오.
- 3-4-7. (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)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서로 상대방의 이 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(Buddy syste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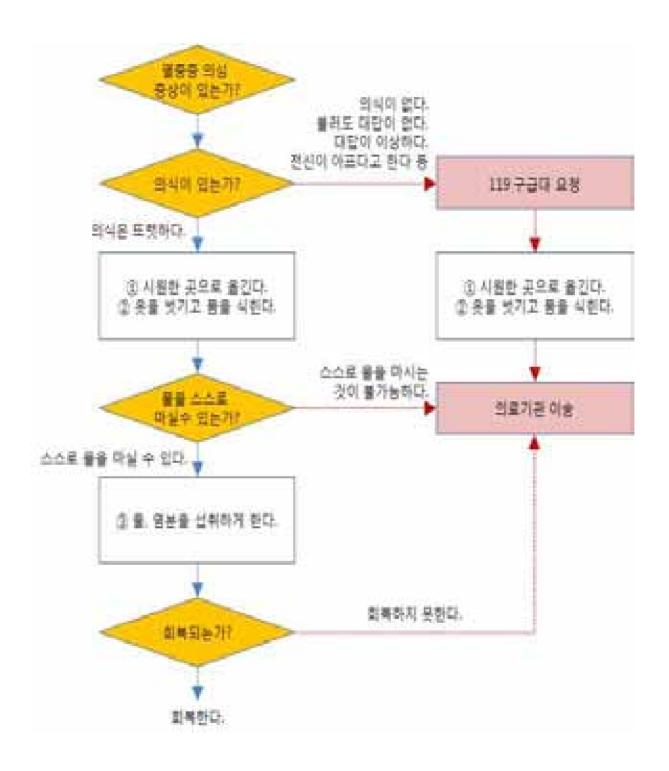
#### 4 이상 징후자에 대한 조치

- 4-1. (이상 징후자에 대한 작업전환 또는 작업중단) 오심, 구토, 현기증 등 열 사병 등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.
  - \*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(징계나 처벌 등)이 없도록 하십시오.

# 부록1 열사병 등의 종류와 응급조치

| 온열질환 | 증 상                       | 응급조치   |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열발진  | ·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      | ·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: 목, 가슴 상부, 서혜부, 유방밑, 팔꿈  | - 소수포 등이 난 부위는 건조 하게 유지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치 안쪽                      | · 살포제(dusting powder) 사용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열성부종 | · 발이나 발목의 부종              | ·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열실신  | · 실신(일시적 의식소실)/어지럼증       | ·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220  | 20(2/17 1722)/9/106       | · 물,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천천히 마심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열경련  | · 근육경련 : 팔, 다리, 복부, 손가락   | · 서늘한 곳에서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스포츠 음료나 주스(투명과즙) 등을 마심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0.1% 식염수(물 1ℓ에 소금1 티스푼 정도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석음) 마심<br>·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성원이 들어난 근육을 마시지<br>※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작하면 안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바로 응급실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열탈진  | · 땀을 많이 흘림(과도한 발한) : 차고 젖 | ·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은 피부                      | · 스포츠 음료나 주스(투명과즙) 등을 마심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           | ※ 0.1% 식염수(물 1분에 소금1 티스푼 정도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창백함, 근육경련               | 서음) 마심<br>·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오심 또는 구토, 혼미, 어지럼증(현기증) | · 증상이 한 시간 이상 되거나 회복되지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.         | 않을 경우는 의료기관 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열사병  | · 40℃가 넘는 체온(직장온도)        | ·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  | 같은 조치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중추신경 기능장애 : 혼수상태, 헛소리   | ·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오한, 심한 두통               | ·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빈맥, 빈호흡, 저혈압            |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· 합병증 : 뇌병증, 횡문근 융해증, 신부  | ※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전, 급성호흡부전 증후군, 심근손상,      | ※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간손상, 허혈성 장손상, 췌장손상, 범발    |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    | 성 혈관내 응고장애, 혈소판감소증 등      |  |  |  |

## 부록2 열사병 응급조치 흐름도



# 붙임 2 열사병 예방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(고용노동부)

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.

####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

폭염주의보: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특 보 : 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, 열실시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
\*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, 발열, 구토, 근육경련, 발열 등이 있습니다.

| 물, 그늘, 휴식!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|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
|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그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.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.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쉬고자 하는 노도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의자나 돗자리, 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.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음-낙하물,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  |  |  |  |
| 휴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( 일최고체감온도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°C)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, 폭염경보(일최고체감온도 35°C) 발령 시에는 15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.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.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땀 증발이 되지 안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)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상청 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〉생활과 산업 〉생활기상정보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가장 무더운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|  |  |  |

#### □ 폭염 예방정보를 활용하세요

-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. 인터넷(www.weather.go.kr)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(날씨나라)을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- 기상청에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더위체감지수\*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더위체감지수를 통해서도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- \* "더위체감지수"는 열스트레스 지수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수인 온열지수 (WBGT)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대상과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를 제고하는 지수입니다

| 당제   | 지수범위           | 明常是理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매우위협 | 30 이상          | <ul> <li>실외작업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별도의 지사가<br/>있을 때까지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함</li> </ul> |  |
| 위험   | 28 이상<br>30 미만 | <ul> <li>기급적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음</li> </ul>   |  |
| 경고   | 25 이상<br>28 미만 | <ul> <li>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줄이고 자주 휴식을 취합 필요가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주의   | 21 이상<br>25 미만 | <ul> <li>고온순화가 안 된 온열질환 취약자는 주의를 요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관심   | 21 미만          |  |  |

- \* 기상청 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→ 생활과 산업 → 생활기상정보 → 더위체감 지수 (5~9월 서비스, 매일 6시, 18시 제공)
- \*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(https://lifesms.kma.go.kr)에 가입하면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

□ 응급상황 대비요령

#### o 발생전 :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

-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, 힘없음, 어지러움, 두통, 빠른 심장박동, 구역,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

#### o 발생후 : 신속하게 응급처리를 실시하세요

-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.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
-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.
-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.
-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.
-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으로 옮겨야 합니다

붙임 3

## 2020년 오존 예·경보제 운영계획

| 문서번호 | 대기정책과-6532 |
|------|------------|
| 결재일자 | 2020.4.3. 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     |
| 방침번호 |            |

|     |        |        | 시 민  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주무관 | 대기정보팀장 | 대기정책과장 | 대기기획관 |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협 조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
# I-SEOUL-U

# 2020년 오존 예 · 경보제 운영계획

2020. 4

기 후 환 경 본 부 (대 기 정 책 과 )

# 2020년 오존 예·경보제 운영계획

오존농도 일정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전파·대응 하여 시민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. 오존저감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

# 1 추진근거

- □ 추진 근거
  - ○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7조의2(예측), 제8조(경보)
 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조의3(대기오염도의 예측·발표대상 등)
  -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

# 2 개 요

### □ 오존 예보제

○ 운영기간 : 매년 4.15. ~ 10.15.

예보내용 : 오늘등급, 내일개황(05시, 11시), 내일등급, 모레개황(17시, 23시)

○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

| 예보구간         |     | 좋음      | 보통   | 나쁨  | 매우나쁨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측농도(ppm/hr) |     | 0~0.030 | 0.031~0.0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91~0.150   | 0.151~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민감군 |         |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따라 유의하여 활동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<br>활동 제한  | 가급적 실내활동               |
| 행동<br>요령     | 취약군 |         |  | 일사량이 높은 14시~<br>16시를 피해 익일 예정<br>된 실외근무 작업시간<br>을 조절하고, 작업 중<br>휴식시간 검토 |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일반인 |         | 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<br>제한 특히 눈이 아픈 사람<br>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|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<br>내생활 권고 |

### □ 오존 경보제

○ 운영기간 : 매년 4.15. ~ 10.15.(예보제 운영기간과 동일)

#### ○ 경보기준

| 구분   | 발령기준            | 해제기준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주의보  | 시간평균 0.12ppm 이상 | 시간평균 0.12ppm 미만 | 주의보 해제  |
| 경보   | 시간평균 0.30ppm 이상 | 시간평균 0.30ppm 미만 | 주의보로 전환 |
| 중대경보 | 시간평균 0.50ppm 이상 | 시간평균 0.50ppm 미만 | 경보로 전환  |

※ 도시대기측정소의 1시간 평균농도가 1개소라도 발렁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권역에 경보 발렁

#### ○ 경보 발령권역

| 권역  | 개소  | 행정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역도 |
|-----|-----|--|-----|
| 도심권 | 3개구 | 종로구, 중구, 용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5 |
| 동북권 | 8개구 |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<br>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 |     |
| 서북권 | 3개구 |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서남권 | 7개구 |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<br>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     |     |
| 동남권 | 4개구 |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                         | A 4 |

<sup>※</sup>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령

### □ 최근 5년 오존 경보발령 현황

(단위: 발령 횟수)

| 구분   |     | 계    | 2015<br>년    | 2016<br>년 | 2017<br>년 | 2018<br>년 | 2019<br>년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|     | 153  | 4            | 33        | 33        | 54        | 29        |
|      | 도심권 | 27   | _            | 5         | 4         | 12        | 6         |
|      | 동북권 | 42   | _            | 6         | 11        | 14        | 11        |
| 주의보  | 서북권 | 22   | 1            | 4         | 5         | 8         | 4         |
|      | 서남권 | 41   | 3            | 16        | 8         | 9         | 5         |
|      | 동남권 | 21   | _            | 2         | 5         | 11        | 3         |
| 경보   |     | 발령없음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중대경보 |     |      | 발령없음<br>발령없음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
- 최근 5년간 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'19년은 감소하였음
- <del>동북</del>권, 서남권의 발령비율이 높으며, 경보·중대경보는 발령되지 않음

# 3 운영계획

### □ 예보제 운영계획

○ **예보기관** : 국립환경과학원(※ 전파 : 보건환경연구원)

○ 운영기간 : 2020.4.15. ~ 10.15.

○ 예보권역 : 서울(단일권역)

○ 예보내용

| 구분    | 05시, 11시 | 17시, 23시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등급 예보 | 오늘 등급    | 내일 등급    |
| 개황 예보 | 내일 개황    | 모레 개황    |

#### ○ 전파방법

| 홈페이지 |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팩스   | 시·구, 유관기관 담당자, 담당팀장 등 예보내용 발송 |
| SMS  | (17시 기준 예보가 '나쁨' 이상일 경우)      |

#### ○ 전파내용

- 예보내용, 행동요령 안내 및 2차전파 요청,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권고

#### 대기배출시설(1~3종) 오존농도 사전통보

○ 통보기준 : 17시 예보 기준 익일 '나쁨(0.091ppm/hr)' 이상일 시

○ 통보내용 : 가동시간 조정 권고·협조요청

○ 통보대상 : 1~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소

○ 통보방법 : 문자, 팩스발송

| 예보구간         | 좋음      | 보통          | 나쁨          | 매우나쁨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예측농도(ppm/hr) | 0~0.030 | 0.031~0.090 | 0.091~0.150 | 0.151~ |

#### □ 경보제 운영계획

○ **경보기관** : **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**(대기질 통합분석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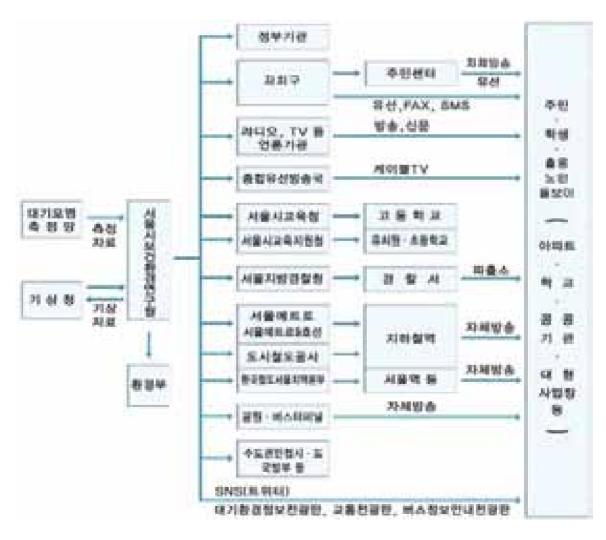
○ 운영기간 : 2020.4.15. ~ 10.15.

○ **발령권역** : 5개 권역(도심권, 동북권, 서북권, 서남권, 동남권)

#### ○ 전파방법

- 보도자료 배포
- 서울시 대기화경정보 홈페이지. SNS 게시
- SMS발송 : 언론사, 市·자치구 유관부서, 서울시교육청, 대기 환경정보 알리미서비스 신청 시민 등
- 대기환경정보전광판, 교통전광판, 버스정보안내전광판(BIT) 등 게시

#### ○ 전파 체계



# ○ 기관별 조치사항

| 7  | 기 관 별            | 조 치 내 용  |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 | 대기정책과            | · 오존 예·경보제 운영계획 수립· 총괄 및 상황실 운영<br>· 오존 예·경보 시민 행동요령 홍보<br>· 자치구 등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  |  |  |  |
| 서<br>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언론담당관            | · 보도자료 배포  |  |  |  |
| 시  | 도시교통실            | · 자동차 운행자제, 대중교통 이용권고 등<br>· 경보상황 보도협조(교통방송)   |  |  |  |
|  | 해당<br>실·국·본<br>부 | · 취약군 관리부서: 아외활동 자제, 휴식제공, 작업중지, 실외근무 금지 안내 등<br>· 민감군 관리부서: 실외활동 자제, 제한, 외출금지 등 안내 등  |  |  |  |
| 보건환경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<ul> <li>오존 예·경보 전파계획 수립·시행 및 오존 상황실 운영</li> <li>오존 경보 발령 상황전파</li> <li>대기오염전광판을 활용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</li> <li>오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</li> </ul>   |  |  |  |
| 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<ul> <li>오존 경보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오존 상황실 운영</li> <li>지역주민, 경로당, 어린이집 등 오존 예·경보 상황전파(2차 전파)</li> <li>홈페이지, 지역방송, 전광판 등 활용 시민행동요령 홍보</li> <li>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안내,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</li> <li>공사장 야외근로자 휴식시간 제공, 야외작업 자제 안내 등</li> <li>민감군, 취약군 관리(실외근무 및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)</li> <li>노천 소각금지 점검 및 단속</li> </ul> |  |  |  |
| 서울시 교육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· 각급 학교 비상연락망 및 전파체계 정비         구 분       조치 사항         주 의 보       ·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       경 보       · 유치원·각급학교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권고         중대경보       · 유치원·각급학교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 조정         · 호흡기·심혈관계 질환자 조기귀가·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 |  |  |  |
| 서울지방경찰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· 경보, 중대경보 발렁 시 해당지역 차량통행 제한 등 단속 협조   |  |  |  |
| <b>공공시설</b><br>(공원 고궁, 자하철 철도<br>체육시설 등) |                  | · 안내방송 및 전광판을 활용 실외활동 자제 권고 등 시민행동요령 전파<br>·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|  |  |  |
|  | 기오염물질<br>H출사업장   | ·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업단축, 가동률조정 등  |  |  |  |
|  | 공사장              | · 야외근로자 휴식시간 제공, 작업주의, 실외근무 금지 등   |  |  |  |
|  | 언론기관             | · 오존 예보상황, 경보 발령상황 보도, 자막처리 등 시민 홍보  |  |  |  |

#### ○ 경보 단계별. 대상별 조치사항

| 구분              | 주의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대경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시민              | 민감군 실외활동 자제<br>취약군 14~16시 휴식  | 민감군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<br>취약군 14~16시 작업 중지 | 민감군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<br>취약군 실외근무 금지 |  |
| 교으청             | 유치원,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           | 유치원, 학각급학교 아외활동<br>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     | 유치원 각급학교 야외활동<br>금지 및 하교시간 조정   |  |
| 교육청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호흡기·심혈관계 질환자<br>조기 귀가·진료 등 특별관리 |  |
| 공공시설            |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                | 야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차량운전자           |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자제<br>대중교통 이용 권장 |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                    |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                |  |
| 대기오염물질<br>배출사업장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업시간 단축권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업시간 단축명령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자동차<br>배출가스 단속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배출가스・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회전 점검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기타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천 소각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### □ 경보 발령에 따른 세부 조치계획

#### ○ 시민 보호조치

- 대 상 : 민감군(영유아, 호흡기질환자 등), 취약군(야외 근로자) 등

- 방 법 : 민감군, 취약군 관리부서를 통한 행동요령 안내 및 휴식시간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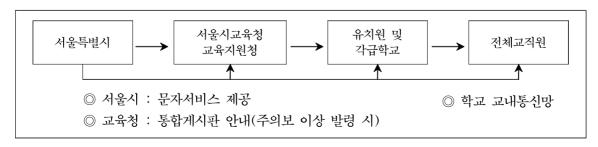
#### ○ 유치원·학생 건강 보호조치

- 대 상 :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생

- 방 법 : 교육청에 유치원·각급학교로 건강 보호조치토록 안내

(중대경보 발령 시 교육청 비상대책반 운영)

- 교육청 상황전파 체계



#### ○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

- 대 상 : 월드컵 경기장, 잠실 주경기장, 효창운동장 등 15개소

- 방 법 : 경보 발령 시 원칙상 운영제한, 일시중단 등 안내

※ 단, 운영제한, 일시중단이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 판단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

#### ○ 차량 운행자제(주의보). 운행제한(경보). 통행금지(중대경보)

- 대 상 : 경보지역 내 차량 운전자 및 시민

- 방 법 : 발령권역 내 운행자제 안내, 대중교통 이용권고 문자

발송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 통제 요청

#### - 기 준

| 구분   | 주의보                  | 경보                     | 중대경보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대상차량 | 경보지역 내 자동차           | 경보지역 내<br>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| 경보지역 내 자동차 |
| 조치사항 | 운행 자제 및<br>대중교통 이용권고 | 운행 제한 및<br>대중교통 이용권고   | 통행금지       |

#### ○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권고(경보), 단축명령(중대경보)

- 대 상 : 1~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
- 방 법 : 조업시간 단축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 공 문발송 및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

※ 단, 운영상 조업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대기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여 가동율 및 부하율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가능

#### ○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강화(경보)

- 단 속 : 자동차 배출가스·공회전 점검반 운영(시·구)

- 방 법 : 경보 발령 시 발령권역 내 점검반 단속 실시

붙임 : 5.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1부.

6. 오존의 피해와 오존발생 기상 조건 1부.

7. 오존경보제 안내 및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·실천사항 각 1부.

8. 2020년 오존경보 추진실적 1부.

# [붙임 5]

#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

(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별표 3)

# ○ 오 존

| 경보단계 | 시민 건강보호   | 대기오염 개선 노력  |
|------|---|---|
| 주의보  | 가.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 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) 다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채육시설 운영 제한 마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.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, 일사랑이 많은 14 시~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가.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<br>나. 대중교통 이용 권장<br>다. 노천 소각금지<br>라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<br>필요한 사항   |
| 경 보  | 가.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. 유치원·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. 취약군은 일사랑이 많은 14시~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| 가.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<br>나.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<br>시간 단축 권고<br>다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<br>필요한 사항 |
| 중대경보 | 가.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. 유치원 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 하고,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 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.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| 가.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<br>나.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<br>시간 단축 명령<br>다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<br>해 필요한 사항 |

### [붙임 6]

# 오존의 피해와 오존발생 기상조건

# □ 오존의 피해

○ 오존농도 수준 및 노출시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

| 오존농도(ppm) | 노출시간 | 영 향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0.1 ~ 0.3 | 1시간  |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, 기침, 눈 자극 |
| 0.3 ~ 0.5 | 2시간  | 운동 중 폐기능 감소           |
| 0.5 이상    | 6시간  | 마른기침, 흉부 불안           |

#### ○ 오존 수준 및 노출시간별 식물에 미치는 영향

| 식물명   | 오존농도<br>(ppm/hr) | 노출시간       | 영 향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무 우   | 0.05             | 20일(8시간/일) | 수확량 50% 감소    |
| 카네이션  | 0.07             | 60일        | 개화 60% 감소     |
| 잎 담 배 | 0.10             | 5.5시간      | 꽃가루 생산 50% 감소 |

# □ 오존 발생의 기상조건(0.091ppm/hr 이상의 고농도 오존 발생)

○ 오존은 풍속이 약한 상태에서 대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(VOCs)과 질소산화물(NO<sub>X</sub>)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 응을 일으켜서 생성됨.

| 구   | 분       | 기 상 조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|
| 풍   | 속       | 풍속이 3m/sec 미만으로 약하게 지속될 때                |
| 기   | 온       | 기온이 약 25℃ 이상으로 높을 때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시  | 나 량     | 일출 후 정오까지의 총 일사량이 6.4MJ/m² 이상으로 일사가 강할 때 |
| 대기인 | l<br>정도 | 대기가 안정하고 역전층이 존재할 때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[붙임 7]

# 오존경보제 안내

### 오존주의보란 ?



여름철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없을 때 오존농도가 시간당 0.12ppm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저감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입니다.

##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

#### ● 시민들께서는

-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유소, 도장시설, 세탁소, 공장 등의 가동을 줄여 오존 발생을 줄입시다.
- 실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 특히 호흡기질환자나, 노약자. 어린이는 외출을 하지 맙시다.
- 여름철 오후 2~5시경 바람이 없고 기온이 높아 일사량이 많은 경우 오존주의보 발령 확률이 높으므로 방송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등의 주의보 발령 전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#### ● 자동차 소유자께서는

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전철, 버스 등을 이용합시다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에 차량진입을 하지 맙시다.

※ 경보(0.3ppm/hr 이상), 중대경보(0.5ppm/hr 이상)가 발렁되면 차량운행이 일부 제한 또는 전면 금지됩니다.

#### ● 우리시에서는

-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을 FAX, 전화, ARS, SMS, 전광판,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사, 자치구, 동주민센터, 학교,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통보하고 있습니다.
- 공장, 주유소, 도장시설 등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



# 오존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

#### 일 반 시 민

#### ○ 실외운동 경기를 자제합시다

- 실외에서 과격한 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호흡기환자와 노약자는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.

#### 자동차 소유자

#### ○ 자동차 운행을 자제합시다.

- 오존농도가 높은 5월~9월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의보 발령 시 운행 중인 차량은 교통방송 유도에 따라 발령 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대중교통을 생활화합시다.

-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행정기관

#### ○ 주의보를 신속히 전파합시다.

- 발령 10분 이내에 시민에게 전파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합시다.

#### ○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입시다.

- 오존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합시다.

# 여름철 오존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항

- ①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합시다.
- ② 하절기에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 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합시다. 승용차 운행시 VOCs, 질소산 화물 배출량이 증가됩니다.
- ③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. 연료 낭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해물질 배출량도 증가합니다.
- ④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. 에어컨의 사용단계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도 달라집니다.
- ⑤ 차량 운행 시에는 경제속도(60km/h~80km/h)를 지키고 급출 발·급제동을 삼갑시다.
- ⑥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. 자동차를 잘 정비해서 타면 연비 가 8~12% 향상되어 그만큼 연료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.
- ⑦ 과적하지 맙시다. 적재량이 많아지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지므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짐을 차에 싣고 다니지 맙시다.
- ⑧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.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연료사용량이 증가되고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납니다.
- ⑨ 기름주유는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어주시고 급유 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.
  -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낮 시간대를 피하여 주유할 경우 휘발성유 기화합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오존오염도 상승을 낮출 수 있습니다.
  - ⑩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,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합시다.

# Ⅳ. 점검 및 보고서식

(서식 1) 폭염특보 발령 일일상황 보고(서식)

[서식 2] 건설현장 폭염대비 사전점검(1차 : 보고서식)

(서식 3) 건설현장 폭염대비 준비실태 점검(2차 : 보고서식))

[서식 4] 폭염 혹서기 공사현장 점검(3차 : 보고서식)

(서식 5)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(점검자 : 현장감독관)

|  | - |
|--|---|
|--|---|

# 서식 1 폭염특보 발령 일일상황(보고서식)

## 폭염특보(영향예보 적용) 발령에 따른 일일상황 보고(서식)

[소관부서 : 000]

#### □ 폭염특보

| 7.17.3       | 폭염   | 전날(11시30분)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폭염특보<br>시행일자 | 주의보 경보<br>(일최고체감온도 (일최고체감온도<br>33℃,이상) 35℃,이상) |            | 기상청 발표 영향예보 일최고체감온도 |
| 월 일(요일)      | √  | , , , ,    | $^{\circ}$ C        |

### □ 폭염특보(권역별) 시행 적용대상 사업장 및 총 근무인원

| 저용리사 계어가 | 현장근무 노동자(단위 : 명) |      |    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|
| 적용대상 사업장 | 계                | 실내작업 | 실외작업 |  |
| 개소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|

<sup>※</sup> 폭염특보(주의보, 경보) 발효일이 주말(토,일)인 경우, 주말(토,일)에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건설공사장은 주말(토, 일요일) 보고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보고할 것

#### □ 추진내용

| 폭염특보      | 폭염 영향예보  | 추 진 내 용(단계별 해당         | ·란에만 기재) | 비고     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주의보       | (일최고체감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오후 휴식시간제 운영 사업장      |          | 매시간 15분씩 |
| T-1-I     | 33℃이상, 2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시업장 : 개소             | - 인원: 명  | 휴식시간 부여  |
|           | 폭염 경고  | o 오후 휴식시간제 운영 사업장      |          | 매시간 15분씩 |
|           | ( <b>일최고체감온도</b><br>35°C이상, 2일)                | - 사업장 : 개소             | - 인원: 명  | 휴식시간 부여  |
|           |  | ※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더라도 일최고체감은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<b>폭염 경고</b><br>( <b>일최고체감온도</b><br>35℃이상, 2일) | ㅇ 오후 실외작업 중지 또는 실내작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<br>  경 보 |  | - 대상사업장                | 개소       |          |
| * +       |  | - 실외작업중지 인원            | 명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 | - 실내작업으로 전환 인원         | 명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폭염 위험  | ㅇ 오후 공사 중단(실내 외 작업 포함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(일최고체감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작업중단 사업장             | 개소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| 35℃이상, 1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오후작업 중단 인원           | 명        |          |

<sup>※</sup> 폭염 영향예보(관심)단계는 폭염특보가 아니므로 일일 상황보고 불필요

## □ 특이사항

○ **수범사례. 사건사고 발생 또는 환자발생 등 〈**구체적으로 기재〉

#### (추가 제출자료)

# 폭염경보(일최고체감온도 35°이상), 발효일자(0월 0일, 0요일) 폭염경보에 따른 추진사항(공사중지 사업장별)

|    |             | 근무인원(단위 명) 실외작업자 조치내용(단 |          | 용(단위:명)  | 비고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연번 | 사업장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| 실내<br>작업 | 실외<br>작업 | 계  | 실내작업<br>으로전환 | 오후<br>실외작업<br>중지 | (작업진행내용 및<br>작업중단시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| 서남물<br>재생센터 | 56 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| 56       | 56 | 0            | 56               | 실외작업장 56명<br>오후14시 실외작업<br>중지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000공사장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 | 50       | 50 | 25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| 실외작업자 50명중<br>25명은 실내작업<br>전환, 25명은 오후<br>14시 작업중지 |
|    |             | 작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성        |    | 예            | A          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
#### ※ 주 의

○ 추가 제출자료는 폭염경보(일최고체감온도 35℃이상) 발령 후 실외작업 노동자가 실내작업으로의 전환된 경우 또는 실외작업 노동자가 실외작업을 중단한 경우에만 작성 (폭염주의보 발령시에는 작성 불필요)

# 붙임 2 건설현장 폭염대비 사전점검(1차 : 보고서식)

(○○○부)

| 총 | 현장수 | : | 개소 (실시 : | 개소, | 미실시 : | : 개소) |
|---|-----|---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  |     |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|

- □ 점검사항
  - 각 건설현장별 자체 대책 수립 및 자체 교육실시 여부
  - 휴게공간 마련 및 식수대·얼음팩·냉난방기 등 비치 여부
  - 폭염대비 우수한 사례 파악 및 타 공사장 전파 등
- □ 현장별 추진사항

| 연번 | 현 장 명            | 추 진 사 항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1  |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1공구) | • 자체 대책 수립,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완료<br>• 휴게공간 2개소 설치, 휴식시간제 운영 예정 |    |
| 2  |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  |    |

#### ※ 추진사항 사진

| ○ 현장명 : |        |  |  |  |  |
|---------|--------|--|--|--|--|
| 추진사항 1  | 추진사항 2 |  |  |  |  |
|         |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|        |  |  |  |  |

# 붙임 3 건설현장 폭염대비 준비실태 점검(2차 : 보고서식)

(〇〇〇부)

□ 사업장 개요

| 현 장 명            | 사 업기 간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000도로 확장공사(0공구) | 00년00월. ~ 00년 00월(00년00개월) |

## □ 점검사항 "상황에 따라 일부 점검내용 변경 가능"

| 연번 | 점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검내용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 | ○ 휴게공간 규모 및 운영<br>관련 적정성 여부         | <ul> <li>건설현장 냉방기 보유현황 ?</li> <li>에어콘 대, 선풍기 대, 기타 :</li> <li>휴게공간에 에어콘 비치 여부 ? (비치, 미비치)</li> <li>에어콘 미비치시 사유 :</li> <li>깨끗한 식수, 식염수 등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 ? (양호, 부족, 없음)</li> <li>비상용 구급함은 비치되어 있는가 (비치, 미비치)</li> <li>작업근로자 샤워실 설치여부 : 개소 설치, 미설치 - 미설치시 대처방안 :</li> </ul> |
| 2  | ○ 건설현장별 자체 대책<br>수립 및 자체 교육이행<br>실태 | <ul> <li>폭염대비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(수립 완료, 미수립)</li> <li>자체계획 미수립시 사유 :</li> <li>폭염대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횟수는 ? 총</li> <li>※ 교육대장 확인(5월부터 점검일 기준)</li> </ul>   |
| 3  | ○ 근로자 안전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> <li>폭염시 옥외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아이스 조끼, 아이스 팩등 보랭 장구 등은 근무인원 대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? (적정, 미비 보완)</li> <li>보완내용 :</li> <li>근무인원 대비 근로자 안전모·안전대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,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은 적정한가 ? (적정, 미비점 보완 지시)</li> <li>보완내용 :</li> </ul>  |
|    | ○ 폭염경보 발령시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폭염경보시 실외작업 중단자의 실내작업 전환, 대체교육 실시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?<br>(계획 미수립, 계획 수립 적정, 계획 미비점 보완지시)<br>- 보완한 내용:  |
| 4  | ○ 기타 (건의사항, 수범사례,<br>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)  | • 필요한 경우 사진 등 첨부 별도 제출해도 됨<br>-   |

점검일: '20. . .

| 점검자 ·  | 담 당 자   | (소속: | 직위:  | ) | (서명)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|--------|
| ロ´ロ´リ・ | П 0 / I | (47. | 771. | , | (~) 0) |

# 붙임 4 폭염 혹서기 공사현장 점검(3차 : 보고서식)

(〇〇〇早)

- □ 사업장명 : 0000도로 확장공사(0공구)
- □ 폭염특보 및 공사개요

| 점검    | 폭염특 | 투보 | 기상청 예보      |    | 작업구년 | _    |     | 근로자(명 | )  |
|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|
| 횟수    | 주의보 | 경보 | 일체감최고기온     | 실내 | 실외   | 실내·외 | 총   | 실내    | 실외 |
| _ 1 차 |     | 0  | <u>36 ℃</u> |    |      | 0    | 100 | 50    | 50 |

□ 폭염특보에 따른 작업행태(작성 예시포함)

| 휴식시간제 운영     | 실외작업자<br>실내작업으로 전환                 | 실외작업중단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내·외작업<br>전면 중단 실시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(ex) 11시~16시 | (ex)실외근무자50명 내실작<br>업으로 전환 14시~16시 | (ex)실외근무자50명 실외작<br>업중단, 실내작업은 진행 | (ex) 14시~16시       |

- 작업전환, 작업중단 등 사유(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)
  - (ex)공사현장 실제온도가 35℃이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외작업자 50명을 실내작업으로 전환
  - (ex)공사현장 실제온도가 37℃이상으로 냉방기 가동 등 온도조절로 실내작업은 가능 하지만, 실외작업자를 실내작업으로 전환이 불가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외작 업은 중단(14~16시)하기로 결정
  - (ex)공사현장 실제온도가 38℃이상이고, 실내작업장에도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이 없어 근로자 안전을 위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실내 및 실외작업 중단(14시~16시)하기 로 결정
- □ 공사현장 점검사항 "상황에 따라 일부 점검내용 변경 가능"

| 연번 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점검내용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 | ○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       | • 시원하고 깨끗한 물은 규칙적으로 마실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<br>가 ? (적정, 보완지시)<br>- 보완시 보완내용 :                 |
| 2  | ○ 안전하고 충분한 그늘막<br>확보  | • 근로자가 일하는 주변에 안전하고 충분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잇고, 의자나 식수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? (적정, 보완지시)<br>- 보완시 보완내용 : |
| 3  | ○ 폭염특보 발령시<br>휴식시간 운영 | •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주기로 10~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? (적정, 보완지시)<br>- 보완시 보완내용 :           |
| 4  | ○ 기타점검 사항<br>(수범사례 등) | -   |

점검일: '20.

점검자: 담당자 (소속: 직위: ) \_\_\_\_\_(서명)

# 붙임5

# **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(점검자 : 현장감독관)**

| 건설시                    | ·업장 | 개           | Ŕ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
| 11 ' <del>11</del> ' 1 | ΙНО | <i>-</i> 11 | -4 |

| 기관·부서<br>(사업장명) |                | 사 업 명<br>(사업기간) |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유형            | 토목, 건축, 설비, 수방 | 노동자 수           |  |
| 담당자명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<br>연락처      |  |
| 현장책임자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현장책임자<br>연락처    |  |

□ 자체점검 조치결과 및 증빙자료(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 활용)

### "상황에 따라 일부 점검내용 변경 가능"

| 확인 내용   | 자체점검 조치결과 | 증빙자료 |
|---|-----------|------|
| ○ 휴식시간이 적절히 <del>부여</del> 되는가?  |           |      |
| <ul> <li>** 가장 무더운 시간대(14:00~17:00)에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(매 시간마다 10~15분, 상호관찰 등 단독작업 제한)</li> <li>- 습도가 높은 경우, 휴식시간을 더 늘려잡도록 조치</li> <li>- 신규입사자의 경우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</li> <li>** 가급적 온습도를 자체 측정하고 관리</li> </ul> |           |      |
| ○ 그늘이 제공되는가?<br>※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함<br>※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  |           |      |
| ○ 제공된 그늘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이 비치되<br>어 있는가?  |           |      |
| ※ 의자나 돗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  |           |      |
| ○ 제공된 그늘은 안전한가?   |           |      |
| ※ 소음, 낙허물,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 |           |      |
| ○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가?  |           |      |
| ※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(알콜, 카페인이 든 음료는 부적절)<br>※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지도 (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갈증을<br>느끼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물을 섭취)   |           |      |
| ○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가?  |           |      |
| <ul><li>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</li><li>열사병 예방 3대 수칙(물, 그늘, 휴식)</li><li>작업 중 동료 노동자의 증상여부 수시확인</li><li>응급조치</li></ul>   |           |      |

|           | 점검일 : |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점검자 : 담당자 | (소속:  | 직위: | )(서명) |
| 현장책임자     | (소속:  | 직위: | )(서명) |